

고려아연주식회사 사외이사 독립성 기준

고려아연(주)은 이사의 독립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내 「상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며, 이사회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사외이사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본 기준을 기반으로 사외이사 후보자 및 재임 사외이사의 독립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사외이사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면, 독립적이라고 판단합니다.

- 사외이사가 지난 5년 이내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지 않은 경우
- 「SEC Rule 4200 Definitions」에서 허용하는 경우¹를 제외하고,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의 직계가족이 회사 또는 자회사로부터 연간 60,000 달러(USD) 이상의 보상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 사외이사의 직계가족이 지난 3년간 회사 또는 자회사의 임원이 아닌 경우
- 사외이사가 회사 또는 회사 경영진의 고문 또는 컨설턴트가 아닌 경우
- 사외이사가 회사와 주된 자문계약 또는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경우
- 사외이사가 최근 3년 이내 회사의 외부 감사기관에 재직하지 않은 경우
- 사외이사가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회사와의 거래실적 합계액이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영업수익의 10% 이상인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경우
- 사외이사가 최근 사업연도 중 회사와 매출총액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경우
- 사외이사가 최근 사업연도 중 회사로부터 기부금 총액의 1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비영리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사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상기 요건 외에도, 이사회는 독립성 결정에 있어 국내외 환경과 이사와 회사의 제반 상황을 포함하여 이사가 회사와 어떠한 중대한 관계가 있는 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¹ i) 회사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로만 발생하는 지급, 또는 ii) 비재량 자선 기부금 매칭 프로그램에 따른 지급